

종돈 일반검정사업 5월부터 시행

종돈업 등록업자·희망농가 보유 혈통등록 및
본등록된 종돈 모두 검정받아야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검정신청서 접수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반검정제도가 시행된다.

본회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의 3과 농수산부고시 제8559호(종축검정 방법)에 의거, 5월부터 종돈업 등록업자와 종돈업 희망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혈통등록 및 본등록된 종돈을 대상으로 종돈의 일반검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종돈업 등록농가와 희망농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반검정 신청서를 본회 또는 공인 종돈능력검정소에 접수시켜서 일반검정을 받아야 한다.

본회는 5월중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소정의 검정서를 교부해 줄 방침이다.

종축업 등록 종돈장과 종축업 등록 희망 양돈장은 일반검정을 필한 후 검정서를 교부받아 종축업 등록기관(각 시장·도지사)에 제출해야 하며, 검정결과 부적격한 종돈장은 종축업 등록이 취소되어 당해년도말 등록증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일

반검정이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검정방법 등은 어떻게 하는지 문답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문: 일반검정이란 무엇인가?

답: 일반검정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돈업 등록에 필요한 자가보유 종돈의 활용가능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실시하는 서류검사와 개체확인을 말한다.

문: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일반검정은 종돈업 등록에 필요한 보유 종돈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사해 돼지의 자질개량을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수종돈을 생산케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문: 일반검정 시행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있는가?

답: 84년 8월 2일 법률 제3738호로 개정·공포된 축산법 제5조와 축산법 시행령(85. 4. 2 대통령령 제11689호) 제5조 ①②③항, 축산법 시행규칙(85. 4. 27 농수부령 제930호) 제6조의 3 항(55page 참조)과 제17조(56page 참조) 및 농수부고시 제8559호(85. 11. 18 고

시 : 종축검정방법)에 종축검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거 일반 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문] : 검정주체, 즉 검정기관은 어디인가?

답 : 축산법 시행령 제5조의 1 항을 보면, 농수산부장관은 검정을 하게 하고자 할 때는 대상 가축의 종류에 따라 검정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종돈 검정기관으로는 (사) 대한양돈협회가 검정기관으로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종돈의 일반검정을 주관하는 곳은 (사) 대한양돈협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이다.

[문] : 일반검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농가는?

답 : 축산법 시행규칙 제17조 1 항을 보면, 종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축업 등록 신청서와 함께 축산법 시행규칙 제6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종축업 등록을 필한 종돈업자나 종돈업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는 일반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문] : 일반검정을 받아야 되는 대상돼지는?

답 : 축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돈업 등록을 위하여 축산법 시행규칙 제6 조의 제3 항에 의한 종축검정 신청서를 제출한 돼지는 모두 일반검정을 받아야 한다.

즉 종돈업 등록 농가와 희망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혈통등록 및 본등록된 종돈은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문] : 일반검정은 어떻게 실시하는가?

답 : 일반검정은 서류심사와 개체확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서류심사는 종돈등록증, 혈통등록증, 본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고, 서류심사가 끝난

돼지에 대하여는 이표번호, 품종 고유의 특징, 건강상태 등 개체확인을 하여 종돈으로서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정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종돈등록, 혈통등록, 본등록된 돼지가 실제 농장에 존재하는지를, 또 서류와 실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돼지들이 종돈으로 사용해도 무방한지를 결정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 : 일반검정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로 하면 되는가?

답 : 일반검정을 받고자 하는 농장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 (55페이지 참조)을 사용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한양돈협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34번지) 또는 공인 종돈능력검정소(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이치 2리 : 전화 마장 426번)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본회(검정소)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검정소 직원이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일반검정을 해 주게 된다.

[문] : 검정서는 교부되는가?

답 : 일반검정 결과는 (검정서 내에 의견표시) 축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거 검정서를 교부해 준다.

[문] : 검정료는 두당 얼마씩 납부하면 되는가?

답 : 본회는 농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두당 검정료를 2,000원으로 결정했다.

[문] : 그밖의 수수료는 없는가?

답 : 없다. 신청농가는 검정료로 두당 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문] : 검정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답 : 일반검정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일반검정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도살되거나 종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종돈의 확인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1년으로 한 것으로 안다.

문 :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양돈업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가?

답 : 첫째, 이 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민간 지정종돈장 제도를 보완해서 종돈개량 속도를 촉진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현행 민간 지정종돈장의 지정 요건으로 되어 있는 축사시설, 종돈두수, 기타 사료작물포를 확인해 주는 것에 덧붙여, 종돈으로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명실공히 종돈개량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양돈장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현행 민간 지정종돈장 기준요건엔 돼지 위생 기준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단지 지시사항으로 방역의 「우선설시」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검정소 직원이 종돈장의 위생 상태를 실제 점검하므로 종돈장의 위생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세째, 이 제도를 시행하면 실제 종돈다운 종돈을 보유한 농장만이 종돈업을 영위하게 되므로, 종돈의 유통체계도 개선할 수 있다.

즉 일반 양돈농가는 직접 일반검정서를 확인하고 종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능력을 발휘하는 종돈만을 선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이 제도는 종돈개량을 촉진해 주고 종돈장의 방역상태를 강화해 줄 뿐더러, 일반양돈농가에서는 능력이 우수한 종돈만을 구입·활용할 수 있어 양돈농가의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검정사업과 관계되는 축산법과 축산법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을 발췌 수록한것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농수산부 고시 제8559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한 종축 검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11. 18

농수산부장관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시행규칙 제 6 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돼지의 검정방법을 정하므로써 돼지의 자질개량을 촉진하는데 있음.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검정”이라 함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돈업등록에 필요한 자가보유 종돈의 활용 가능여부를 인정받고자 실시하는 서류검사와 개체확인을 말한다.
2. “검정기관”이라 함은 축산법 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실시적용】 지정된 검정기관에서는 본 검정요령에서 정하는 검정실시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다만 국·공립기관은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제 2 장 일 반 검 정

제 4 조【검정대상】 축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돈업 등록을 위하여 축산법시행

규칙 제 6 조의 3 제 3 항에 의한 종축검정 신청서를 제출한 돼지로 한다.

제5조【검정방법】 종돈의 일반검정은 서류심사와 개체확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서류심사는 종돈등록증, 혈통등록증, 본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고 서류심사가 끝난 돼지에 대하여는 이표번호, 품종 고유의 특징, 건강상태등 개체확인을 하여 종돈으로서 활용 가능 여부를 검정한다.

제 6 조【검정서 교부】 제 4 조에 의거 검정된 종
돈에 대해서는 그 신청인에게 축산법시행규

(별지 제 1호의 2서식) (전)

칙 제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돈검정서를 교부하되, 종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돼지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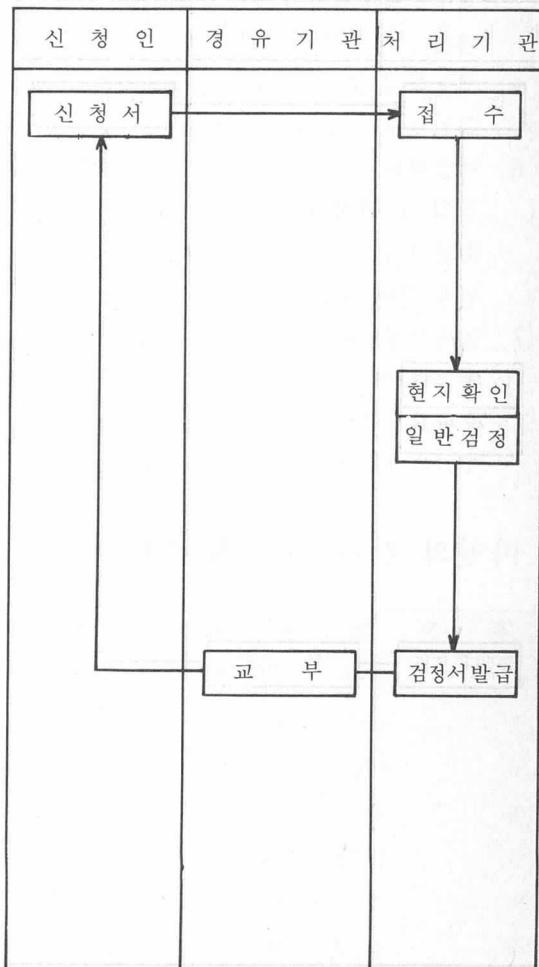
축산법 시행규칙

제 6 조의 3 (종축의 검정)

1.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 종축은 제 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이 되었거나 혈통보증이 되어 있는 가축으로 한다.

- ## 2. 종축의 검정은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후)



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일반검정과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그 검정방법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일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의 2 서식의 종축검정신청서를 종축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종축검정기관이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종축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 1 호의 2 서식의 종축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제 4 항의 종축검정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능력검정신청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7. 종축검정기관은 영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검정신청인으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의 금액은 종축검정기관이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7조(종축업의 등록등)

1. 법 제1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종축업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 9 호 서식의 종축업등록신청서에 제 6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등록신청내용이 별표 1 의 종축업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종축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종축업의 등록을 하거나 종축업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종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4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축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달의 알기 쉬운 농업용어

농촌진흥청 제공

종 전 용 어	제 정 용 어	종 전 용 어	제 정 용 어
근 경(根 莖)	뿌 리 줄 기	방 향 식 물(芳香植物)	향 기 식 물
근 열(根 藥)	뿌 리 벌 기	배 토(培 土)	복 주 기
기 지(忌 地)	땅 가 림	삽 수(插 穂)	꺽 꽂 이 순
내 성(耐 性)	견 딜 성	상 해(霜 害)	서 리 피 해
단 간(短 稿)	짧 은 키	성 묘(成 苗)	자 란 모
도 장 지(徒 長 枝)	웃 자 랍 가 지	시 산(始 産)	처 음 낭 기
만 성(蔓 性)	덩 굴 성	액 비(液 肥)	물 거 름